

한국부식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학회는 한국부식학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부른다.

제2조 본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본회는 부식 및 방식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힘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ㄱ. 학술 강연회와 강습회의 개최
- ㄴ. 회지와 학술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 ㄷ.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업적의 표창
- ㄹ. 부식과학기술에 관한 국제 교류
- ㅁ.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나눈다. 정회원중 종신회원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부식과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식이 있거나, 이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7조 대학에서 제6조에 규정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는 학생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은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업기관은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에서 인정하는 자는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본회에 정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입회허가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2조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의 입회는 이사회가 의결한다.

제13조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총회의 인

준을 얻어 결정한다.

제14조 본회의 입회비는 500원으로 하며, 회비는 1개년에 정회원 1,000원, 학생회원 500원 단체회원 3,000원 이상, 특별회원 1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단, 평의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종신회원 회비는 정회원 회비 10년분으로 한다. 별도로 제정하는 간행물 분포 세칙에 따라, 본회 경기간행물의 우송료 및 기타 인쇄물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회비는 약년도분을 년말 안으로 천납하여야 한다.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 회비를 천납한 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본조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천납회비를 납부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제17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3장 임원

제18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ㄱ. 회장 1명
- ㄴ. 부회장 약간명
- ㄷ. 평의원 약간명
- ㄹ. 감사 2명
- ㅁ. 이사 약간명(총무, 재무, 사업 및 편집 각 2명)

제19조 회장, 부회장, 평의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임원은 중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수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20조 회장, 부회장, 평의원, 이사는 임기만료 후에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가 그 후보자를 선정하여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의 서신투표에 의한 인준을 얻는다. 단, 서신투표에 있어서는 총투표수가 정회원수의 1/1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그 인준 결과를 정회원 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에 결원이 시진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보궐선

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3조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24조 평의원은 본회의 중요회무를 실의한다.

제25조 감사는 본회의 모든 회계를 감사한다.

제26조 편집이사는 별도로 제정된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본문집사 및 책임업무를 주관한다.

제27조 본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제 4 장 회 의

제28조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로 나눈다.

제29조 총회는 정회원으로써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ㄱ.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때

ㄴ. 정회원 1/10 이상으로부터 의안을 갖추어 요구가 있을 때

제30조 총회는 회의 7일전까지 그 심의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또는 본회 정기간행물 혹은 신문지상에 광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31조 다음 사항은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ㄱ. 전년도 수지결산

ㄴ.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ㄷ.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32조 다음 사항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ㄱ. 전년도 사업

ㄴ.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33조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써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전까지 심의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34조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ㄱ.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ㄴ. 표창에 관한 사항

ㄷ.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35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6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ㄱ.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구경의 제정 및 개폐

ㄴ.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추진, 집행하는 제위원회 설치

ㄷ.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37조 회장은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8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가 의장이 되고 편집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39조 총회는 정회원의 1/10 이상, 평의원회는 평의원의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평의원이 서면위원을 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40조 각 회의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가, 부 등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41조 본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써 구성된다.

ㄱ. 회원이 납부한 회비

ㄴ. 기부금과 기부물체

ㄷ. 자산에서 생긴 수익

ㄹ. 기타의 수입

제42조 다음 각 항의 자산을 기본자산으로 한다

ㄱ. 기본자산으로 지정, 기부된 것

ㄴ. 평의원회에서 기본자산에 편입하기로 의결된 것.

제43조 기본자산 이외의 자산은 통상자산으로 한다.

제44조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수리한다.

제45조 기본자산의 원본은 처분할 수 없다. 단, 사무집행상 필요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 본회의 경비는 통상자산으로써 충당하고 경비의 잔여가 생겼을 때는 다음해 경비에 이월한다. 단,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자산에 편입할 수 있다.

제47조 기본자산의 관리방법은 평의원회에서 정하고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48조 다음해 예산안은 매년 10월에 차기 총무이사로 선임된 자가 편성한다.

제49조 필요한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0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의 1/3은 지부 운영에 충당한다.

제 6 장 지 부

제51조 특별시, 직할시 및 각도에 본회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2조 지부는 해당 시, 도에 거주하는 정회원 50명 이상으로써 구성한다. 단, 학생회원 2명을 정회원 1명으로 간주한다.

제53조 지부에 직장 또는 단체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제54조 지부에는 다음의 지부 임원을 둔다.

| | |
|------------|-----|
| ㄱ. 지 부 장 | 1 명 |
| ㄴ. 지부평의원 | 약간명 |
| ㄷ. 지 부 이 사 | 약간명 |
| ㄹ. 지 부 감 사 | 약간명 |

제55조 지부의 임원은 지부 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은 지부의 추천을 거쳐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56조 지부장은 매년 1월에 임원명단, 분회 및 분회 회원 명단, 전년도의 회무 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지부는 본회의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58조 지부규약은 지부가 작성하되, 본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지부에 소속하는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회비

제 7 장 분 회

제60조 동일한 직장 또는 단체에 속하는 정회원 5명 이상으로써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학생회원 2명을 정회원 1명으로 간주한다.

제61조 분회에는 분회장 1명을 둈다.

제62조 분회장은 본회 회장 또는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63조 분회장은 매년 1월에 소속회원 명단을 본회 간사장 또는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회원의 이동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칙변경과 해산

제64조 본회 회칙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출석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5조 본회의 예산의 의결을 하려면 총회에서 정회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6조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67조 본 회칙은 1971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